

「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0. 30(금) 평창군수(경제체육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11. 20(금)

다. 상정일자 : 2015. 12. 7(월) 제21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경제체육과장 한왕기)

-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1회에 한정함으로써 위법성을 해소하고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수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1회에 한정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”를 “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”을 “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0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「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